



제 429국회 (정기회)
제 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780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 적용기한 연장(정일영의원안, 최수진의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장철민의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정부안, 최기상의의원안)	2
2. 우대공제 대상 고령 근로자 연령요건 완화(최은석의원안)	7
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특례 적용 기업 및 대상 확대(이인선의의원안, 최은석의원안)	13

I. 개요

1.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78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은석의원 등 18인
- (2) 제 안 일 : 2025. 7. 28.
- (3) 회 부 일 : 2025. 7.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며, 60세 이상인 사람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음.

그런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55세 이상 고령자들의 재취업 및 중소기업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 8 및 제30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 적용기한 연장(정일영의원안, 최수진 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장철민의원안, 최은석 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정부안, 최기상의원안)

현행		개정안		
○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적용대상: 모든 기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제외) ○ 고용지원대상: 상시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기본공제 - <u>개정안별 공제율 상이</u>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3년 지원)	대기업(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1,450	1,550	800	400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34세				
- 사후관리: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 적용기한 - <u>2025. 12. 31.</u>		○ 적용기한 - <u>2027. 12. 31.(한병도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윤영석의원안)</u> - <u>2028. 12. 31.(윤준병의원안, 김정호의원안, 최수진의원안, 장철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u>		

현행	개정안
	<u>부안</u> - <u>2030. 12. 31.(박정하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최기상의원안)</u> ○ 시행일 - 2025. 1. 1. (윤준병의원안, 김정호의원안) - 2026. 1. 1.(박정하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최수진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장철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정부안)

* 박정하의원안 2024. 6. 20. 발의(의안번호 702), 윤준병의원안 2024. 7. 22. 발의(의안번호 2065), 김정호의원안 2024. 9. 5. 발의(의안번호 3666), 정일영의원안 2025. 1. 22. 발의(의안번호 7695), 최수진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번호 7750), 한병도의원안 2025. 2. 28. 발의(의안번호 8592), 김주영의원안 2025. 3. 18. 발의(의안번호 9046), 장철민의원안 2025. 7. 1. 발의(의안번호 11186), 최은석의원안 2025. 7. 28. 발의(의안번호 11780), 추경호의원안 2025. 8. 12. 발의(의안번호 12138), 윤영석의원안 2025. 8. 21. 발의(의안번호 12284),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최기상의원안 2025. 10. 28. 발의(의안번호 13767)

□ 개정안은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안, 김주영의원안 및 윤영석의원안은 기본공제의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안, 김정호의원안, 최수진의원안, 장철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추경호의원안 및 정부안은 기본공제의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정하의원안, 정일영의원안 및 최기상의원안은 기본공제의 적용기한을 2030년 말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기업의 채용 확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유인을 제공하며, 세제지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이 안정적인 고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통합고용세액공제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26년에는 총 4조 6,340억원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득세	10,761	13,524	15,917	18,523	19,976
법인세	18,814	22,379	22,190	24,564	26,364
합계	29,574	35,903	38,107	43,087	46,340

주 1) 2025, 2026년도는 전망치임

2) 기존 고용지원 세액공제 실적을 포함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실적 집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둘째,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양한 재정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용 지원 사업 현황]

대상	사업명	사업내용 및 편성현황
근로자	지역고용 촉진지원금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1/2

대상	사업명	사업내용 및 편성현황
		(대규모기업은 1/3) 최대 1년간 지원 - 2025년도 예산: 59억원
청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 취업애로청년 등 채용 후 6개월 고용 시 사업주 월 최대 60만원(최대 720만원) 지원 - 2025년도 예산: 10만명 지원분(7,772억원 편성)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고용 장려금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 2025년도 예산: 75.6만명 지원분(3,774억원 편성)
고령자	고령자계속고용 장려금	-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 - 2025년도 예산: 357억원 편성
경력단절 여성	고용유지장려금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의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인턴지원금 지급(월 80만원, 최대 240만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해당 기업에 고용유지장려금 지급(80만원) - 2025년도 예산: 정규채용 후 12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에 고용유지장려금 추가지급(80만원)

셋째, 기업 규모별 또는 소재지별 공제액 변화의 차이를 이용한 분석결과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확대가 상시근로자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장기적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 종료를 목표로 축소 연장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¹⁾

기획재정부 역시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결과²⁾를 근거로 기업의 신규채용 의사결정에서 세제혜택은

1)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통합고용세액공제」, 2025. 9.

2) 수혜기업 심층면담시 기업의 채용 의사결정시 신규채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할 급여 등 비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 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고용을 확대한 기업을 사후적으로 지원하고 있을뿐 신규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넷째, 기업이 고용 관련 조세지원을 항구화된 제도로 인식할 경우 조세특례 제도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³⁾

한편,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에 대하여는 개정안마다 3년 또는 5년의 기간을 제안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용적 측면을 고려할 뿐, 사전적으로 세제지원 제도를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3)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통합고용세액공제」, 2025. 9.

2. 우대공제 대상 고령 근로자 연령요건 완화(최은석의원안)

현행	개정안																																										
○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적용대상: 모든 기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제외) ○ 고용지원대상: 상시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 대상 중 60세 이상 근로자를 55세 이상 근로자로 확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table><tr><th rowspan="3">구분</th><th colspan="4">공제액 (단위:만원)</th></tr><tr><th colspan="2">중소(3년 지원)</th><th rowspan="2">중견 (3년 지원)</th><th rowspan="2">대기업 (2년 지원)</th></tr><tr><th>수도권</th><th>지방</th></tr><tr><td>상시근로자</td><td>850</td><td>950</td><td>450</td><td>-</td></tr><tr><td>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td><td>1,450</td><td>1,550</td><td>800</td><td>400</td></tr></table>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34세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	1,450	1,550	800	400	<table><tr><th rowspan="3">구분</th><th colspan="4">공제액 (단위:만원)</th></tr><tr><th colspan="2">중소(3년 지원)</th><th rowspan="2">중견 (3년 지원)</th><th rowspan="2">대기업 (2년 지원)</th></tr><tr><th>수도권</th><th>지방</th></tr><tr><td>상시근로자</td><td>850</td><td>950</td><td>450</td><td>-</td></tr><tr><td>청년정규직, 장애인, 55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td><td>1,450</td><td>1,550</td><td>800</td><td>400</td></tr></table>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34세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55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	1,450	1,550	800	400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	1,450	1,550	800	400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55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	1,450	1,550	800	400																																							
○ 적용기한: 2025. 12. 31.	○ 적용기한: 2028. 12. 31.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																																										

* 최은석의원안 2025. 7. 28. 발의(의안번호 11780)

□ 개정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 대상 중 60세 이상의 근로자의 연령요건을 55세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8제3항제3호에 따르면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

상인 근로자가 증가할 경우 일반적인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 대비 350만원에서 600만원 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개정안은 우대공제 대상 고령 근로자의 연령요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가 있어 보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⁵⁾은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정의하면서 사업주가

4)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850만원
 -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95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③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① 사업주가 제12조에 따른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고령자를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간 정합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필요한 측면이 있음.

둘째, 고령자의 고용 촉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2025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의 비율은 69.9%이고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52.9세로 나타남.

개정안과 같이 55세 이상인 자를 추가 고용할 경우 통합고용세액 공제 상 우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될 경우 고령 근로자의 재취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

(단위: 천명, %, %p)

		2025. 5		
		계	남자	여자
구성비	< 전 체 >	(11,226)	(5,201)	(6,025)
	30세 미만	6.4	0.9	11.1
	30~39세	6.5	5.3	7.5
	40~49세	15.2	16.0	14.5
	50~59세	37.2	38.4	36.2
	60~69세	30.6	35.6	26.3
	70~79세	4.1	3.8	4.4

자료: 통계청,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3조(고령자 기준고용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참고로 OECD는 고령자를 55세 이상 64세 이하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고, 통계청이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역시 해당 정의를 차용하여 고령자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 고령 근로자의 연령 완화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20년 68.8%에서 2024년 71.6%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고령자 고용동향]

(단위: 천명,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15세 이상 전체인구	44,785	45,080	45,260	45,407	45,570
고령자 인구 비중	17.9	18.1	18.2	18.3	18.5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68.8	68.6	70.3	71.4	71.6
고령자 고용률	66.6	66.3	68.8	69.9	69.9
고령자 실업률	3.3	3.3	2.2	2.1	2.4

주) 고령자 대상: 55세~64세(OECD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또한, 55세 이상 59세 이하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60세 이상 대비 약 1.6배 높게 나타나고 있음.⁶⁾

둘째, 연령요건 완화 시 55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현행 제도 하에서 우대공제를 적용받던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6)○ 경제활동참가율('24년, %): (50~54세) 80.3 (55~59세) 77.4 (60세 이상) 47.3

○ 고용률('24년, %) : (50~54세) 79.0 (55~59세) 75.8 (60세 이상) 45.9

* 자료: 기획재정부

셋째, 고령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상 다른 조세특례 제도는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⁷⁾는 65세 이상인 거주자에 대하여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⁸⁾에 따르면 60세 이상인 사람이

7)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상인 거주자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8)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 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최초 3년간 연 2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의 70%를 감면 받을 수 있음.

넷째, 현행 기준은 정년 도래로 비자발적 실직 상태에 놓인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적 정년인 60세⁹⁾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아직 법적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60세 미만 근로자는 60세 이상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 필요성이 낮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문 의 처
02)6788-5154

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특례 적용 기업 및 대상 확대(이인선의원안, 최은석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0조) ○ 대상: - 청년(만 15세~34세), <u>60세</u>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 경력단절 근로자 요건 -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동일업종기업 요건 폐지) - 퇴직사유: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및 가족돌봄 - 퇴직기간: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 ○ 요건: <u>중소기업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u> ○ 감면내용: 취업일부터 3년간(청년은 5년간) 중소기업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70%(청년은 90%) 감면 ○ 감면한도: 200만원 ○ 적용기한: 2026. 12. 31.까지 취업	□ 감면특례 적용 기업 확대(이인선의원안) 및 적용대상 확대(최은석의원안) ○ 대상: - 청년(만 15세~34세), <u>55세</u>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최은석의원안) ○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u>중소기업</u>(이인선의원안) ○ 감면내용: (현행과 같음) ○ 감면한도: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최은석의원안) - 공포 후 3개월(이인선의원안) ○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이인선의원안)

* 이인선의원안 2025. 2. 5. 발의(의안번호 7909), 최은석의원안 2025. 7. 28. 발의(의안번호 11780)

□ 2건의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특례의 적용 기업과 적용대상을 확대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인선의원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는 기업을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¹⁰⁾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이며,

최은석의원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특례 적용 대상 중 고령자 기준인 “60세 이상”을 “55세 이상”으로 변경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¹¹⁾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특례는 세후소득의 증대를 통해 경제적 약자인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려는 입법취지에 따라 2011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음.

신설 당시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2013년 말까지 취

10) 현행 농업, 제조업 등 표준산업분류상 1,205개 중 1,037개 업종에만 적용 중임.

1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하도록 규정하였다가, 2013년 세법 개정으로 60세 이상인 고령자와 장애인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감면율은 50%로 하향 조정하였음.

이후 2015년 세법 개정으로 감면율을 70%로 다시 상향 조정하는 대신 연간 150만원의 감면한도를 설정하였고, 2016년 세법개정부터는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 단절 여성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2018년 세법 개정시 청년에 대한 감면율을 90%로 상향하였음.

또한 2022년 세법개정 과정에서 감면한도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2023년 세법개정으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년까지로 연장하였음. 또한 2024년 세법개정으로 기존 대상자 중 ‘경력단절 여성’이,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경력단절 근로자’로 확대되었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개정 연혁]

구분	2011년 개정	2013년 개정	2015년 개정	2016년 개정	2018년 개정	2022년 개정	2024년 개정
적용대상	청년	청년·고령자 · 장애인		청년·고령자·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청년·고령자· 장애인·경력단 절 근로자
감면기간	취업후 3년간		취업 후 3년간 (청년은 5년간)				
감면율	100%	50%	70%		70%(청년 90%)		
감면한도	-		150만원			200만원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24년 1조 1,38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5년에는 1조 1,638억원, 2026년에는 1조 2,26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연도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연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2024 년	2025 년 (전망)	2026 년 (전망)
조세지출 규모	6,059	7,792	8,397	9,667	9,609	11,384	11,638	12,260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먼저 이인선의원안의 경우, 개정안은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직군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대상자들의 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직군을 가리지 않고 폭넓은 분야로 취업을 독려할 수 있으며,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는 1,622만 명으로, 여성 1,000만 5천명, 남성 621만 5천명이며, 재학, 수강 및 취업준비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39.1%인 것으로 확인됨¹²⁾.

12)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성/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자료갱신일: 2025.9.10.), 통계청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현황]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구 분		2024. 5.			2025. 8.			증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규 모	< 전 체 >	16,004	6,102	9,902	16,220	6,215	10,005	216	113	104
	- 육 아	686	15	670	684	14	671	-1	-2	1
	- 가 사	5,942	230	5,713	5,977	227	5,751	35	-3	38
	- 재학·수강등 ¹⁾	3,214	1,649	1,565	3,271	1,674	1,598	58	25	33
	- 연 로	2,453	1,463	990	2,480	1,471	1,009	27	8	19
	- 심신장애	460	293	166	472	302	170	12	9	3
	- 기 타 ²⁾	3,250	2,452	798	3,335	2,528	807	86	76	10
	※ 취업준비 ³⁾	633	348	285	635	351	284	2	3	-2

주: 1.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수강,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 등을 포함

2. 학원·기관 수강 외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대기, 쉬었음 등을 포함

3. '재학·수강 등' 중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과 '기타' 중 학원·기관 수강 외 취업준비의 합계
자료: 통계청

이에 개정안과 같이 모든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에 따르는 기대소득이 증가할 수 있고, 이 경우 높은 임금을 기대하여 취업 준비를 하고 있거나 구직을 단념한 자 또한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경제 전체의 동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내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동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총 23개의 사업군¹³⁾에 포함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에만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음. 이는 해당 사업군의 상대적 소득수준 및 해당 산업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동 특례의 적용을 결정한 것임.¹⁴⁾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¹⁵⁾에 따르는 중소기업들을 모두 포함시킬 경우 조세특례 대상이 대폭 확대될 수 있음. 동 조에 따르면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추고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총 업종별 매출액¹⁶⁾ 또는 자산총액(5천억원) 요건만 충족하면

-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은 제외한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은 제외한다)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18의2. 컴퓨터 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14)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부동산 임대업 등

1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자본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이하 생략)

1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시행령 [별표 1],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매출액 400억원이하(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1,800억원(1차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임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전체에 대해 조세지출을 확대할 경우 현행 제도상 특례에서 배제되고 있는 산업군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¹⁷⁾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은 대상자들에게까지 소득세 감면 특례가 확대될 수 있음. 특히 회계·세무 등 고소득·전문직종, 유흥업·비디오물 감상실 등 청소년 유해업종 등도 특례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¹⁸⁾

□ 다음 최은석의원안의 경우, 개정안은 적용대상인 고령자의 기준을 60세에서 55세로 하향함으로써, 기존에는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55세~60세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취업대상자들의 소득세가 감면되어 수혜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55세 이상 고령자들의 재취업 및 중소기업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고령 근로자의 연령 기준을 하향하여 55세~59세 연령층에 대해 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최근 사회적 논의의

17)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동 제도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채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제도로, 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집중하려는 당초 취지 등 감안시 회계·세무 등 고소득·전문직종인 취업 선호업종 및 유흥주점업·비디오물 감상실 등 청소년 유해업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8) 특히, 현재 시행령을 통해 배제되고있는 금융 및 보험업, 통관업, 부동산 임대업 등은 고소득·전문직종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대상자들이 종사하는 직군일 수 있음. 2023년 기준 33%에 달하는 근로소득자의 면세자들이 동 제도를 통해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오히려 지원 기업의 확대가 세제지원의 역진성을 유발할 수 있음.

흐름 및 현행 연령 기준 설정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특히 개정안의 방향이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정년 연장 등 최근 사회적 논의의 흐름과 방향을 같이하는지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55세~59세 연령층의 경우 60세 이상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자 규모가 큰 편이므로, 해당 연령층이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발생하는 세수감소 규모에 대해서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50세 이상 연령별 경제활동 현황(2024년)]

(단위: %, 만명)

연령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80.3	77.4	47.3
고용률	79.0	75.8	45.9
취업자	320	268	198

자료: 기획재정부

문 의 처

02)6788-5149